

**MAHLE**

MAHLE Business Code  
MAHLE 업무규범



# 서문

‘MAHLE’는 고성능, 정밀, 완성도 및 혁신을 상징합니다. MAHLE는 고객 만족 극대화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제품은 언제나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창업자 Ernst Mahle의 좌우명과도 일치합니다.

성공을 위한 MAHLE의 중점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 시장 진출 (Global presence)
- 유기적인 성장과 선택적 인수합병 (Organic growth and selective acquisitions)
- 혁신 (Innovation)
- 제품 품질 (Product quality)
- 시스템 전문성 (System expertise)
- 헌신적인 직원 (Dedicated employees)
- 비용 효율성 및 수익성 (Cost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MAHLE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MAHLE 그룹<sup>1</sup>의 윤리규범, 내부 규칙,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고, MAHLE 경영 이사, MAHLE 경영 위원, 이사와 임원을 포함한 MAHLE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업무규범을 도입합니다. 본 업무규범의 목적은 모든 임직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MAHLE의 해외계열회사들의 경우 본 업무규범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의 요구사항 및 특성을 수용하여 본 업무규범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HLE가 50% 지분 또는 25% 이상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독일을 포함한 기타 국가 내 합작회사들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본 업무규범의 목적과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외부인이 본 업무규범의 목적과 목표를 준수하도록 권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1 “MAHLE 그룹”은 회계적으로 완전히 연결된(fully-consolidated) 모든 MAHLE 계열회사들을 포함합니다.

## 1. 법과 책임의 준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제 및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내부 준칙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AHLE의 모든 직원들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MAHLE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의견을 언급할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MAHLE의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됩니다. MAHLE는 우수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상시무결점정책을 통하여 최대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성에 대한 MAHLE의 철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서, MAHLE는 직원들에게 제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법령 또는 내부규정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직원은 지체 없이 책임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경쟁법 및 독점금지 관련 법률

MAHLE는 기업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MAHLE는 모든 수준에서 각국의 또는 국제적인 경쟁법 및 독점금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경쟁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체 금지됩니다.

### 3.1 경쟁회사와의 관계

직원들이 경쟁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반경쟁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반경쟁적인 공동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격관련 정보(실제 가격, 총 가격, 가격 목록 등), 가격인상, 생산설비 가동률, 접수 주문 및 장래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민감하거나 전략적인 정보를 경쟁회사에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도 독점금지 관련 법률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점금지 관련 법률은 모든 형태의 경쟁제한 행위(즉, 자율경쟁에 내재되어 있는 Risk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모든 조치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을 (고객 또는 지역에 따라) 할당하거나, 경쟁회사간에 시장 점유율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 3.2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

고객 및 공급업체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공급 조건 또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도 그러한 계약에 포함됩니다. 독점적 판매의무를 부과하거나 고객을 제한하거나,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업금지 및 사용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 행위 유형입니다.

### 3.3 동업자단체 가입 및 업계회의 참석

동업자단체 내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용하고 경우에 따라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독점금지 관련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MAHLE와 그 경쟁회사들은 동일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바, 그러한 단체를 통하여 독점금지과 관련한 시장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종업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러한 단체나 회의에 가입 또는 참여하여야 하는 공정한 사업적인 필요성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MAHLE의 직원들이 가입한 단체의 다른 회사들이 불법적인 정보 공유에 관여하는 경우, MAHLE의 직원들은 그러한 공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록에 이의 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지체 없이 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정보 공유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3.4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금지의 관점에서 MAHLE는 일부 제품군에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독점금지 관련 법률을 포함)들이 MAHLE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고객을 차별 취급하거나,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한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해외 무역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MAHLE는 해당 국가에서 현재 유효한 모든 무역, 세금 및 통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제품 구매, 생산 또는 유통 시 이러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출관리규정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및 기술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품의 수출입 및 기타 해외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관련 무역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당국으로부터의 모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무기수출통제 관련 법령 역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부패 방지

MAHLE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MAHLE는 직원 및 사업 파트너들의 불공정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5.1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부당한 이익은 결코 요청, 승낙, 제공하거나 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란 그 수익자가 청구할 권리가 없으면서 수익자의 경제적, 법적, 또는 개인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향상시키는 각종의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익’은 금전적 사례뿐 아니라, 각종의 현물, 행사 초대권 및 기타 사적/개인적 성격을 가진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이익’은 또한 배우자, 파트너, 친구 및 친인척 등 해당 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어떠한 이익이 관련한 모든 상황, 특히 이익을 수수하는 사유와 수익자의 개인적 지위 등 요인에 비추어 관례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경우 그러한 이익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일례로 어떠한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익이 제공된다면, 그러한 이익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금품 또는 기타 유사한 이익의 수수는 그러한 금품 또는 이익의 가치가 50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행사 초대 등 회사 차원의 접대 제공 및 수령은 명확한 업무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5.2 제3자의 선정 및 투자결정

업무상 거래와 관련하여 MAHLE를 위해 행위할 제3자 (자문사, 중개인, 후원자, 대리인 기타 에이전트 등)를 선정하는 경우, 불공정한 업무행위를 하는 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은 상기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3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5.3 공급업체와의 관계

공급업체는 가격, 품질 및 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관계는 신뢰와 정직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제안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심사하여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적이거나 자의적인 고려가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 5.4 MAHLE 자산 보호

MAHLE 그룹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특히 사기, 횡령, 부패, 절도와 같은 형사 범죄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6. 기부 및 후원

모든 기부 및 후원은 투명하고 추적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목적에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가장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부금 액수가 상당한 경우, MAHLE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00 유로를 초과하는 기부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에게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후원의 경우에 후원금의 액수는 후원으로 인한 회사의 이득(특히 예상되는 홍보 효과)과 비례하여야 합니다.

## 7. 내부자 거래 및 권유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법령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특정증권 혹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내부정보를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란 공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내지 사건으로서 주식시장이나 특정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정보는 오로지 업무목적상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내부정보 보유자는 승인 없이는 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특정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 또는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 8. 보고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수령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모든 Business Communication은 관련 법령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Annual Report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수집되고 기록된 모든 자료 및 기타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이고,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회당 액면가 10,000 유로 이상의 어떤 현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9. 비밀유지

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모든 사업 내지 영업 관련 비밀정보와 기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정보(특히 공급업체, 고객, 직원, 사업 파트너 및 기타 제3자에 관한 정보와 내부정보)는 제3자 및 업무무관 직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 비밀유지의무는 고용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10. 정보의 보호 및 안전

MAHLE는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와 모든 업무자료의 보안을 최우선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 개인정보와 모든 업무자료를 권한 없는 접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 11. 이해의 상충

업무상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업무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은 예방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업무수행 중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MAHLE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MAHLE와 직원 또는 그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회사 사이의 거래는 업계의 관행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MAHLE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1,000 유로를 초과하는 거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해상충은 인사결정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 관계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직원도 MAHLE의 이해와 상충되는 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경쟁관계 있는 회사를 위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 12. 회사 재산 및 시설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MAHLE의 재산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오로지 업무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13. 보건, 안전 및 환경 및 기후보호

MAHLE는 인류와 자연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건, 안전 및 환경 및 기후보호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 14. 직원 지원

### 14.1 해석 또는 법적 불확실성에 관한 질문

본 업무규범에서 언급된 사항과 관련한 해석이나 법적으로 불분명한 점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직원은 법무부서, 준법지원부서 또는 해당 지역 준법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14.2 규정준수 위반 보고

잠재적인 규정 준수 규칙 위반, 특히 반독점법 또는 반부패법 위반 가능성을 신고하고자 하는 직원은 준법지원부서 또는 해당 지역 준법지원 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규정 준수 위반을 신고할 때 웹 기반 내부 고발자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밀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외부 옴부즈맨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커뮤니케이션은 기밀로 취급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익명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14.3 추가 정보

본 업무규범의 최신 버전과 그 부속 가이드라인(독점금지 관련 법률 및 사기와 부패방지법에 관한 지침) 및 준법 지원부서의 연락처 정보는 MAHLE의 인트라넷 "About us/Group/Compliance"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웹 기반 내부 고발 시스템(<https://mahle.integrityplatform.org/>)의 링크는 MAHLE의 인트라넷 ("About us/Group/Compliance" 항목) 및 MAHLE의 웹사이트 ("Company/Compliance" 항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5.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

MAHLE의 이사와 임원들은 본 업무규범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독 의무와 조직관리 의무를 적법하고 적절히 이행하여 법규, 내부 가이드라인 또는 본 업무규범의 위반행위가 예방되거나 회피되도록 한다.

- 모든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조사하여, 중단한다.

위와 같은 이사 또는 임원들의 의무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해당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각 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Corporate Internal Audit (CA)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본 업무규범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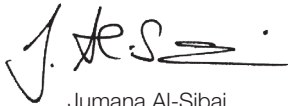
MAHLE는 법규, 내부 규정 또는 본 업무규범의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 관계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슈투트가르트, 2024년 10월 28일

The MAHLE Management Board



Arnd Franz



Jumana Al-Sibai



Georg Dietz



Martin Wellhöffer



Dr. Beate Bungartz



Markus Kapaun



Martin Weidlich

MAHLE GmbH  
Corporate Compliance Office  
Pragstraße 26-46  
70376 Stuttgart  
+49 711 501-0  
compliance@mahle.com

[www.mahle.com](http://www.mahle.com)